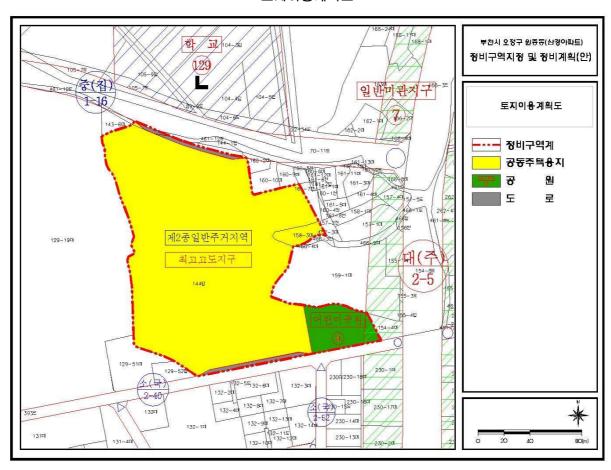
다. 토지이용계획

-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형태와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중심의 토지이용구상
- 대상지 주민의 편의 및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구 분		 명 칭	면	적	비율(%)	비고	
1 =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m²	평	U = (%)	0175	
	용도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21,997	6,654	100.0	변경사항 없음	
_ 도시		최고고도지구	21,997	6,654	100.0	57.86m	
관리계획 	용도지구	일반미관지구	161	4.9	7.3	대로2-5호선변 : 폭 30m	
		계	21,997	6,654	100.0		
택지 및		주택용지	20,000	6,050	90.9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공공시설 (도시계획시설)	공공시설 용지	소 계	1,997	604	9.1		
		도 로	483	146	2.2	중로1-16호선, 소로 2-40호선	
		원 공	1,514	458	6.9	어린이공원@	

<토지이용계획도>



라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1) 도로

○ 삼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차량진출입부의 원활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가감속차로(폭원 3m)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모(중로 1-16호선, 소로2-40호선)

■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	규 모		7 모			연장			사용	주요	최초	
구분	등급	유 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		형태	경과지	^{죄소} 결정일	비고
기정	중로	1	16	20	집산 도로	707	대로 2 - 5	중로 1 - 3	일반 도로	_	94.08.05	
변경	중로	1	16	20~2 3	집산 도로	707 (92)	대로 2 - 5	중로 1 - 3	일반 도로	_	_	
기정	소로	2	40	8	국지 도로	662	대로 2 - 5	오정동 156-2	일반 도로	_	68.1.30	
변경	소로	2	40	8~11	국지 도로	662 (91)	대로 2 - 5	오정동 156-2	일반 도로	_	_	

^{※ ()}는 구역내 연장임

2) 공원

○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, 단지내 보행동선체계와 연계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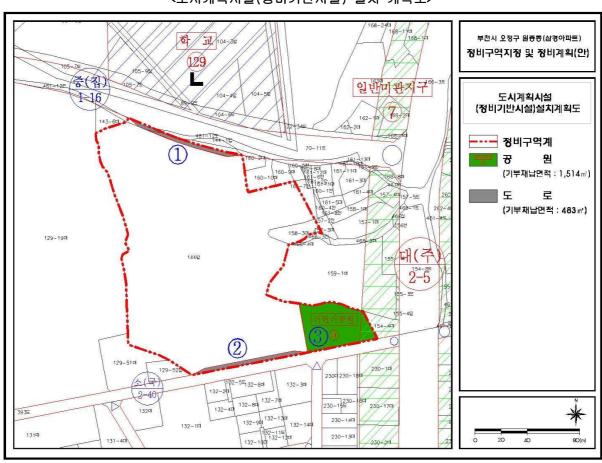
■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	시설명	시설의	면 적 (㎡)			이 뒤 시 최조 시		비고
十世	시번호	시설당	세분	77.7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01.77
신설	a	공원	어린이 공원	오정구 원종동 144번지	_	증)1,514	1,514	_	

3) 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 설치계획

٨	시설명	도면표 시번호	연장 (m)	면적 (㎡)	조성내용	조성주체
	합 계			1,514	-	
	도 로			483	_	
	중로1-16	1)	92	243	• 가감속차로(폭원 3m)조성 후 기부채납	조합
	소로2-40	2	91	240	• 가감속차로(폭원 3m)조성 후 기부채납	조합
어린	[이공원@	3	-	1,514	• 어린이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	조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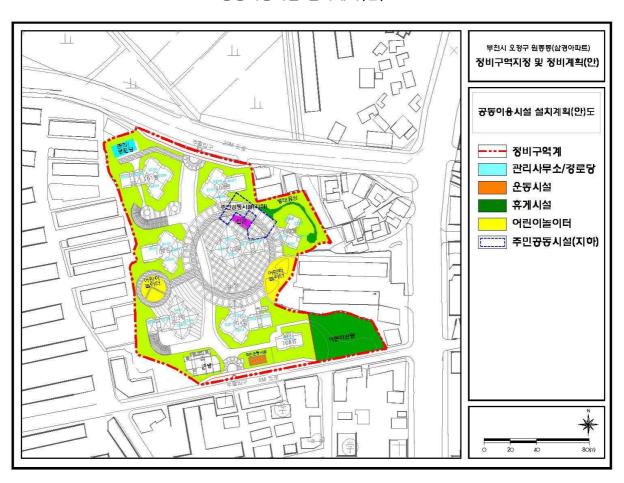
<도시계획시설(정비기반시설) 설치 계획도>



마.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

시설의 종류	법정기준	법정	면적(㎡)	개소	비고
관리사무소	10㎡+(세대수 <i>-</i> 5) x0.05㎡이상	29.45㎡이상	150.00 m²	1	
어린이놀이터	50㎡+(세대수-300) ※0.1㎡이상	639.00㎡이상	660.00 m²	2	
경 로 당	20㎡+(세대수-150) %.1㎡이상	48.90㎡이상	150.00 m²	1	
주민공동시설	500세대 이상인 경우, 3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	63.90㎡이상	637.22m²	1	선큰가든 지하
주민운동시설	500세대 이상인 경우, 300㎡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㎡를 더한 면적이상 호가보	_	273.00 m²	1	
휴게시설	300~500세대인 경우, 1개소 이상	1개소	_	1개소	생태공원

<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도>



바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층수·높이·연면적에 관한 계획

1) 건폐율·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

구 분	현 행	법정기준	계 획	비고
용도지역	제2종 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폐율	32.7%	60%0 ō⊦	30%0 ā⊦	
용적률	146.2%	200%이하 (단, 지구단위계획 250%이하)	기준용적률 : 200% 상한용적률 : 230%	
최고층수 (최고높이)	4~5층	15층이하 (최고고도지구 : 57.86m)	15층이하 (해발 57.86m이하)	

주)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: 기준용적률 $\times [(1+0.3 \, \text{kg})/(1-a)] \leq 상한용적률$ a = 공공시설 제공면적/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

※부천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·용적률 현황

구 분	건 폐 율	용 적 률	비고
제1종일반주거지역	60%0 ā	150%이하 (지구단위계획 200%이하)	
제2종일반주거지역	60%0 ā	200%이하 (지구단위계획 250%이하)	
제3종일반주거지역	50%0 āŀ	250%이하 (지구단위계획 300%이하)	

2)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등에 관한 계획

결 정 구	구역구	분		나 또는 기구분	위 치	주된용도	건폐율	용적률	연면적	층 수	
분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ח א	十七	용도 (%) (%)		(m²)	(최고높이)	
신 설	삼경아파 트 재건축 정비구역	21,997	획지 I-1	20,000	원종동 144번지 일원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21.69	223.40	70,476.16 (지상 4,680.37)	지상 10~15층 지하 2층 (해발 57.50m)	

○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
(『부천시 도시계획 조례』의 규정을 적용한 행위제한의 완화)

구 분	용적률 인센티브 적용
공공시설 제공시 산식	당해지역 용적률 X [(1+0.3a)/(1−a)] α :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/공공시설 제공전의 대지면적
적용식	200% X [(1+0.3×0.0908)/(1-0.0908)] = 225.96% α : (1,997/21,997) = 0.0908

○ 용적율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225.96%까지 완화가 가능

3)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

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『국민주택 규모건설비율기준』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

■ 전용면적별 세대수

구	분	합 계	60㎡이하	60~85㎡이하	85㎡초과	비고
세대수	기준	100%	20%이상	40%이상	40%이하	상가 15세대
(호)	계획	100% (439세대)	25.1% (110세대)	50.1% (220세대)	24.8% (109세대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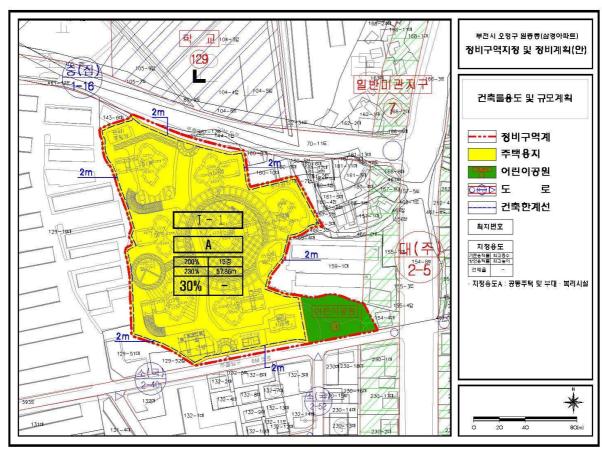
4) 가구 및 획지계획

○ 도로, 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단일가구(획지)로 계획

도면	가구번호	부구번호 면적(m²) 획 지		지	비고	
표시번호	기구인모	한국(배)	위치	면적(㎡)	01.77	
			461-12	17.0		
Ĭ-1	Т 1	1-1 20,000	144	19,592.0	대지의 합병	
1 1	1 1		17.0	네시크 합이		
			158-3	374.0		

주) 가구 20,000㎡은 도로, 공원 부지를 제외한 면적임

<건축물용도 및 규모계획>





5) 층수 및 높이계획

가) 기본방향

-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 규모 및 용도, 입지적 특성 등이 고려된 높이 계획
 -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최고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모를 고려
- 단지 전체와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하여 층수와 건축형태가 함께 고려된높이 계획

○ 조망

- 조망이 좋은 곳은 자연요소로의 경관을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시야개방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탑상형 건물 배치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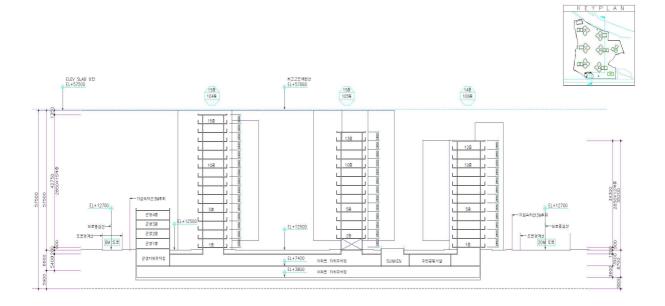
나) 계획내용

☑ 최고높이계획

구 분	최저높이	최고높이	비고
제2종일반주거지역	_	15층 이하	
최고고도지구	-	해발 57.86m 이하	

☑ 높이계획 적용

구 분	삼경아파트	비고
지반고	12.50m	
층 수(높이)	지하 2층, 지상 10~15층(45.00m)	
표고	57.50m	



6)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계획

○ 기본방향

- 주변 환경에 부응하는 색채계획 수립
-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
-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낮은 순도색의 사용을 권장
- 보조색은 2가지 이내로 하며, 2차색 이상의 혼하색으로 주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의 사용을 권장

○ 계획내용

- 주조색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얼굴이며, 아파트 단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 짓는 칼라를 일컫는 색상으로 입면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색 계통을 사용
- 보조색은 아파트의 세부 동별 인상을 결정짓는 칼라개념이며, 단지 전체의 다양한 색상전개를 형성함. 주조색보다는 한단계 이상 진한색을 지니게 됨
- 강조색은 아파트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부여하고, 중후감과 명확성을 표현 하는데 사용함. 보조색보다 진한계통의 색을 사용

구 분	계 획 내 용	비	고
주조색 (70%이상)	•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 •원색은 금지		
보조색 (10~30%)	●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●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것		
강조색 (10%미만)	•제한없음		

7)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
	구 분	른	계 획 내 용	비고
전면공지		-16호선변 -40호선변	•보행자의 통행편의 제공을 위해 폭원 2m의 보도 조성	
기타	담	장	•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•담장의 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	